수원당수 A-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 12. 2)

[필독]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청약신청 및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청약신청 및 서류제출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고객님의 안전을 위함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App: LH청약센터)로 진행**합니다.
- **서류제출(서류제출대상자만 해당)**은 **현장 제출이 불가**하며,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만** 받습니다.

1. 건설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일원 행복주택 204호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당수 A-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204호)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406호)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행복주택 세대유니트(견본주택)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당수 A-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02)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세부 자격요건은 아래 공고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2014. 12. 2 이후 혼인)인 사람

2)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만 6세 이하 자녀(2014. 12. 3 이후 출생)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2014. 12. 3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청약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무주택,소득,자산 조사/소명처리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1.12.13(월) ~ 22(수)	'21.12.28(화)	'21.12.29(수) ~'22.1.5 (수)	소명대상 개별통보	'22.3.24(목)	'22.4.6(수) ~8(금)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구분 (청약신청 타입)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건설 호수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주차장	
46A	46AL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	2	2	46.68	20.4465	6.4042	32.2077	105.7384
	46AH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4	12	12	46.73	20.4684	6.411	32.2422	105.8516
46B	46B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	3	3	46.96	20.5691	6.4426	32.4009	106.3726
46AS	46AS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8	4	4	46.73	20.4684	6.411	32.2422	105.8516
55A	55AL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4	16	17	55.62	24.3623	7.6307	38.376	125.989
	55AH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00	49	50	55.65	24.3755	7.6348	38.3967	126.057
55B	55BH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4	7	7	55.95	24.5069	7.6759	38.6037	126.7365
	55BL	신혼부부·한부모가족	4	2	2	55.94	24.5025	7.6746	38.5968	126.7139
55AS	55AS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9	4	5	55.65	24.3755	7.6348	38.3967	126.057

구분 (청약신청 타입)	공급 형별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합계	계약금 (5%)	잔금 (95%)					
46A	46AL	80,400	4,020	76,380	308,200	(+) 36,000	116,400	128,200	6~10
						(-) 69,000	11,400	451,950	
	46AH	80,400	4,020	76,380	308,200	(+) 36,000	116,400	128,200	
						(-) 69,000	11,400	451,950	
46B	46B	80,000	4,000	76,000	306,660	(+) 36,000	116,000	126,660	
						(-) 69,000	11,000	450,410	
46AS	46AS	80,400	4,020	76,380	308,200	(+) 36,000	116,400	128,200	
						(-) 69,000	11,400	451,950	
55A	55AL	94,800	4,740	90,060	363,400	(+) 43,000	137,800	148,400	
						(-) 81,000	13,800	532,150	
	55AH	94,800	4,740	90,060	363,400	(+) 43,000	137,800	148,400	
						(-) 81,000	13,800	532,150	
55B	55BH	94,400	4,720	89,680	361,860	(+) 43,000	137,400	146,860	
						(-) 81,000	13,400	530,610	
	55BL	94,400	4,720	89,680	361,860	(+) 43,000	137,400	146,860	
						(-) 81,000	13,400	530,610	
55AS	55AS	94,800	4,740	90,060	363,400	(+) 43,000	137,800	148,400	
						(-) 81,000	13,800	532,150	

- 동별 최고층수 차이(15층 이하 또는 15층 초과)에 따른 구조설계상 벽체 두께 차이로 인해 동·호별 형태·면적의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주택형이라도 주택형별 각각 AH와 AL, BH와 BL로 타입이 구분됩니다.
- **청약신청은 AL, AH형은 구별없이 A주택형으로 청약신청하며, BH, BL형은 구별없이 B주택형으로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 **46AS, 55AS는 주거약자용 세대**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세부요건은 아래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확인)**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3년 6월 예정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의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입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6AS형, 55AS형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403동 1호 2층~9층, 2호 2층~10층)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11. 주거약자용 주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택형 전 타입에 가스쿡탑(3구형), 주방가구(상·하부장), 냉장고장, 신발장, 펜트리(시스템선반포함), 드레스룸 도어가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또는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이며, 입주시작 1개월 전에 LH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 예정인 분들도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상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위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404동 101호, 105호 / 407동 101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상담사와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0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와 ②~④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②~④를 모두 갖춘 자

①-㉮ **(신혼부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2014. 12. 02 이후 혼인)인 사람
2)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만 6세 이하 자녀(2014. 12. 03 이후 출생)를 둔 사람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2014. 12. 03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월평균소득금액
2인	5,018,789원 이하(110% 적용 금액)	5,931,296원 이하(130% 적용 금액)
3인	6,240,520원 이하	7,488,624원 이하(120% 적용 금액)
4인	7,094,205원 이하	8,513,046원 이하(120% 적용 금액)
5인	7,094,205원 이하	8,513,046원 이하(120% 적용 금액)
6인	7,393,647원 이하	8,872,377원 이하(120% 적용 금액)

* 7인 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61,251원(맞벌이 신혼부부), 384,376원(일반 신혼부부)을 합산하여 산정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수원시** 또는 연접지역**(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수원시, 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02)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수원시**에 **신청자 본인**(예비신혼의 경우 대표신청자 본인)이 거주하는 자

- **배점** (신청자 본인 기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수원시**에 3년 이상 거주	**수원시**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사람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직접 발급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화면 하단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은행 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수원당수지구 A-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 주택관리번호 : 2021000924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수원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추첨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02) 현재 **위『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형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주거약자" 란?

행복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또는 연접지역**(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수원시, 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이외지역)**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3순위	제1순위 또는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주거약자용 배점**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수원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02) 현재 위 주거약자용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형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

• **주거약자용 배점**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수원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주거약자용 배점→ **수원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사람→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일반공급의 경우 동일 순위 및 배점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구분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인터넷(PC,모바일) 접수만 가능** **'21. 12. 13(월) 10:00 ~ 12. 22(수) 17:00**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1. 12. 28(화) 17: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서류제출대상자조회'	**'21. 12. 29(수) ~ '22. 1. 5(수)** **※ 온라인 제출 또는 등기우편만 가능** **※ 우편물 수신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경기본부 임대공급2부 수원당수 A-4블록 서류제출 담당 (우편번호 : 13637)	**'22. 3. 24(목) 17:00 이후**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당첨/낙찰자조회' * ARS(1661-7700)	■ **전자계약** **'22. 4. 6(수) 10:00 ~ 4. 8(금) 17:00** ※부동산전자계약 이용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만 받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인터넷(PC,모바일)으로 청약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제출기간 내 해당서류**(공고문 5. 신청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발표 등 추후 일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센터-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및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PC) 청약 방법[청약기간: '21.12.13(월) 10:00 ~ 12.22(수) 17:00]

▪ **신청방법**

공인인증서 준비 → LH청약센터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① 공동인증서 준비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공동인증 로그인	임대주택-인터넷 청약 클릭	지구(블록) 및 주택형 선택	공급구분 선택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2021.12.13(월)) 오전 10시부터 마감일(2021.12.22(수)) 오후 5시까지이며,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있게 신청하신 후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2021.12.02)기준 수원시 거주 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표등본상 수원시 거주시작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청약신청 시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를 입력**해야 하며,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체결안내문, 잔금안내문, 입주안내문 등 중요 우편물이 해당 주소지로 발송되오니 이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우편물수령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SMS 수신동의 및 이메일 주소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청약기간: '21.12.13(월) 10:00 ~ 12.22(수) 17:00]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공인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②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 다운

③ 모바일 신청 : 이후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은 인터넷신청 방법을 확인해주세요.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2021.12.13(월)) 오전 10시부터 마감일(2021.12.22(수)) 오후 5시까지이며,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있게 신청하신 후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 청약한 건을 PC에서 수정·취소가 가능하며, PC에서 청약한 건을 모바일에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당첨자 확인, 계약내역 조회, 보증금 납부내역 조회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wifi)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여부 확인 및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021.12.28(화)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여부 확인 방법**

* PC: LH청약센터(apply.LH.or.kr)→ 상단『인터넷청약』클릭→ 활성창 오른쪽 아래『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클릭
*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드롭다운메뉴에서『서류제출대상자 조회』선택

▪ **서류제출 방법**

-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를 포함한 자격입증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 (공고문 5.신청서류 참고)
- **제출방법 : ①등기우편 ②인터넷 접수(전자파일 업로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가능**
- **제출일정 : '21.12.29(수) ~ '22.01.05(수) (※ 등기우편의 경우 ~'22.01.05(수)까지 우체국소인이 찍혀야 함)**

① 등기우편 제출 방법

▪ **등기우편은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됩니다.**
▪ 서류 미비, 발송주소 오기, 우편 분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등기우편 발송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2부**
수원당수 A-4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637)
*** ~'22.01.05(수)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됨**
* 우편이 분실되지 않도록 봉투 겉면에 "수원당수 A-4블록 행복주택 서류제출"이라고 기재해주세요.

②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PC, 모바일)

▪ 인터넷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인터넷(PC,모바일)을 통해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고객서비스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인터넷 서류제출 유의사항**

ㅇ 인터넷 서류제출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웹) 또는 모바일 LH청약센터 앱(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LH청약센터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 LH청약센터 앱을 통한 모바일 서류접수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기기에서는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터넷 서류접수가 중단될 경우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가능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청약센터 안내 참조)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모바일은 7종 허용(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PC,모바일앱)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1.12.02)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하며,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1**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위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첨2**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첨3**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의)**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아래 해당자는 반드시 제출>** · "한부모가족" 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별첨4***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별첨4***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미혼인 경우도 발급 가능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행정복지센터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순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의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재청약자		· 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①「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행정복지센터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③「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12.7.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④「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2. 03. 24(목) 17:00 이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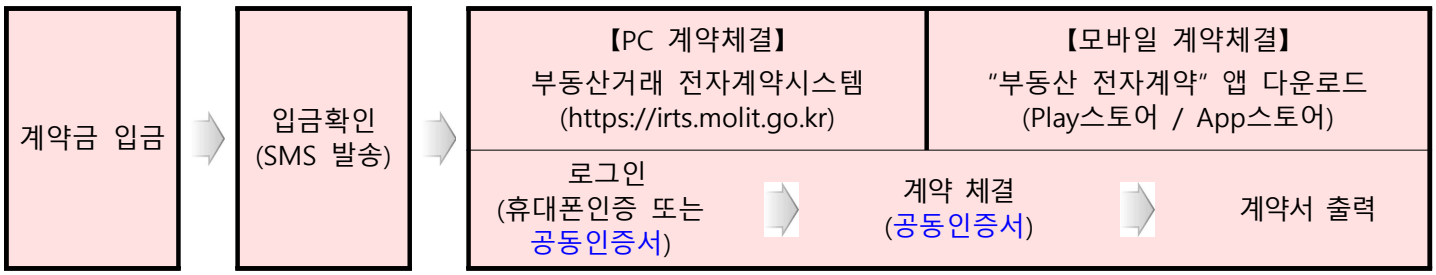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당첨자는 문자 발송 예정)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계약안내

- 계약금 입금계좌 및 계약 관련 상세 절차는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에게 우편을 통해 개별 안내됩니다.
 ※ 우편물은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함
- 계약안내문을 우편으로 수령한 이후 계약체결 기간 내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개별안내 예정)

전자계약(PC·모바일) **[계약체결기간 : 2022. 04. 06(수) 10:00 ~ 2022. 04. 08(금) 17:00]**

【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함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사업주의 고용장

				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지방세정 자료

		주택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합계에서 차감)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최대 거주기간: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 출산, 입양,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대학생으로서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셔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 자동차 등록 관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1년의 경우 3,496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table>
<tr><td></td><td>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table>
<tr><td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d><td colspan="2">할증비율</td></tr>
<tr><td>최초 갱신계약 시</td><td>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d></tr>
<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
<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
<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
</table>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입주자의 갱신 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td></tr>
<tr><td>신청자격</td><td>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td></tr>
<tr><td>중복입주
금지</td><td>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td></tr>
<tr><td>신청 서류</td><td>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d></tr>
<tr><td>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td><td>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td></tr>
</table>

지구 및 단지특성	**□ 지구 내·외부 여건(지구 내 또는 지구 인근의 혐오시설)** **ㅇ 지구 여건** -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999호, 2018.01.04.)로 승인된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16호, 2019.12.10.)로 승인된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15호, 2021.09.24.)로 승인된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에 따라 조성될 예정이나 승인조건 이행 및 지자체 의견, 민원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동될 소지가 있음 - **지구 서측에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가 개발 중이며, 본 당수지구와 연계·통합하여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에 따라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지구계획이 크게 변경될 수 있으며, 연계형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한 지구계획 변경 승인까지 조성공사를 중지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순연될 수 있음 - 본 지구의 조성공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지구계획 등 지구 여건에 따라 인허가 변경 등으로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일부가 군항공기의 운항경로에 포함되어 항공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지구 주변 여건(고속도로 2개소 및 연결도로)으로 도로 및 공사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구 북측에 공급처리시설(변전소)이 위치해 있으며,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기 바람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본 지구는 사업진행 중으로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설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구 내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용지(상업, 업무시설, 도시지원시설)는 공사일정 및 용지매각에 따라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구 내 설치된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가로등, 녹지,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력,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음 **ㅇ 단지 내부 여건** -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에는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이 같은 동 내 혼합 배치되어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공급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생울타리 담장 등이 설치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 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및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레벨 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조경석, 옹벽 등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 담장, 옹벽 등은 지구단위계획 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단지 내 시설은 지역 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음 -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시설은 지자체 의견 등을 참고하여 국공립 또는 외부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운영방식에 따라 단지 외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출차주의 등 경보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주출입구에 인접한 1층과 저층부 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단지 주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 1층에 설치된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및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 포함)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401, 406, 408동 1~4호 라인, 403동 1~5호 라인, 402, 405동 2~3호 라인, 404동 3호라인은 필로티(1층), 401동 2호 라인은 경비실(1층), 403동은 작은도서관/실내놀 이터(지하1층), 406동은 피트니스센터 등과 연결되어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경사로 등의 통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재활용차량 등의 통행에 따른 악취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지상층 주출입구 진입을 위해서 일부 경사가 형성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출차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인근 동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2.7m임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지하 732대,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지상 3대이며, 총 735대 중 23대는 장애인 주차장, 23대는 교통약자형 주차장임(장애인 주차장 및 교통약자 주차장은 동별로 상이함)(73대는 경형 주차장, 30대는 전기차 주차장) - 문주와 근접하여 배치된 401동은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팸플릿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 동 계단실, 승강기홀이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공법 적용 시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작은도서관, 관리사무소, 피트니스센터, 계절창고, 경비실 등이 있으며,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단, 어린이집에는 주방가구와 신발장이, 피트니스센터에는 운동기구가 제공(의자, 소파 등 실내가구나 컴퓨터 등 기타 비품은 일체 제공되지 않음)될 예정이며, 설계 및 제공되는 운동기구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단지 내 부대시설(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관리사무소, 피트니스 센터, 경비실 등)의 공사시 위치, 다른 실로의 통합/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등), 세부사항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절창고는 일부 동 지하에 설치되며, 각 운영방법은 입주 후 결정・안내될 예정임(계절창고 설치 수량은 총 세대수 미만으로 설치되어, 일부 세대만 이용 가능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열기·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전기실, 발전기실, DA의 설치 위치에 따라 세대별로 소음 및 분진 등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해제, 해지, 하자 보수 등 민원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위치를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여야 함 - 아파트 및 상가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전력기기(지중개폐기 및 변압기)와 맨홀이 설치되며, 일부 인접동 및 세대의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인입(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와 접한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설치될 수 있음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 이용 세대수 차이가 있음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층 및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고 일부 동, 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되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각 동에 설치된 승강기 기계실 및 승강로 인접 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승강기 내부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며, 에어컨은 설치되지 않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 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 하였음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 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고,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 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태양광설비는 전체 동 지붕층에 설치 예정이며, 위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음 - 공청 및 위성 안테나는 403동 옥탑층에 설치 예정이며, 전파조사 결과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및 비상시 가동으로 진동,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설치위치 : 405동 3·4호세대 북서방향 지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급속충전기 1대, 완속충전기 2대 및 이동식충전기용 콘센트를 지하주차장에 설치 예정임 - 아파트 및 상가 통신인입 관련하여 통신맨홀이 단지출입구 부근에 설치될 수 있음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로비폰)를 부착하여 경비원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여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입차 정보를 세대 내에 통보할 수 있는 차량출입시스템이 적용됨 - 지하주차장에는 안전운행과 차량소통을 위해 차량유도등이 설치되며, 주차 공간별 주차유도시스템은 설치되지 않음 - 무인택배시스템과 스마트우편함은 각 동별 설치 예정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승강기, 놀이터, 쓰레기보관소, 각 동 출입구 등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됨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원당수지구 AI 아파트 서비스(홈네트워크+스마트홈 사업자(KT, SKT, LGU+) 제공서비스)는 "홈IoT" 앱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음 - AI 아파트 서비스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무상서비스 기간 종료 후에는 스마트홈 사업자 요금 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 할 수 있음 (서비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무상 서비스 종료 시점에 자동 해지됨) - AI 아파트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가 스마트홈 사업자를 선택하고, 입주 시 선택한 스마트홈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함 - AI 아파트 서비스 내용은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상품 개선, 스마트홈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무상서비스 제공 기간 내라도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LH 및 스마트홈 사업자는 입주자들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 AI 스피커(입주자가 선택한 KT, SKT, LGU + 기본사양 장비) 사용 시 음성제어를 포함한 다양한 AI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음(타사 AI 스피커 이용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AI 스피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 인터넷이 설치되어야 하며, IoT 가전 연동을 위하여 세대 내 WiFi 환경이 제공되어야 함(세대 내 인터넷 및 WiFi는 통신사와 무관 하며 입주자 부담사항임) - IoT 가전 기기는 별도 구매하여야 하며, IoT 가전 연동 및 일부 서비스는 각 스마트홈 사업자 연동 가능 모델에 한하여 제공됨 - TV/뮤직/인터넷전화 등 일부 서비스는 별도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됨 - 외부에서 홈네트워크 시스템 연동을 위해서는 고정IP가 필요하며, 공용 통신요금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음 - 각 동 전면, 후면 조경 공간에는 이동식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 사용을 위해 일부 식재가 생략될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설치)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고 특히 생활자원보관소는 일부 동 주변(정면, 측면, 후면)에 설치되어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악취 및 해충,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함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및 시설물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조경 구조물과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7m 입니다.

ㅇ 지구 내 또는 지구인근의 혐오시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를 아래와 같이 설치합니다.

* 옥외안테나 : 옥상층(402동, 406동, 408동)
* 중계장치 : 옥상층(402동, 406동, 408동), 지하1층(407동 PIT, 휀룸)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관련 유의사항

- **세탁기 설치 시 발코니2(다용도실) 출입 창호 탈거 후 설치 가능**하며, 세탁기 등 가전제품 설치공간은 제품 규격 등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불가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시설물의 위치·구조·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와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명칭·동 표시·아파트 문양·BI 로고·벽체 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각 층 승강기홀 및 계단실 채광·환기창의 설치여부와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음.
- 계단실 및 승강기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의 승강기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마감이 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음
-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실에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2층 이상 설치, 필로티 및 주민공동시설 직상층 등 일부 미설치) 및 상부세대 하향식 피난구 사다리 전개를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물건 적치가 불가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타입은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실이 세대 내부에 설치되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타입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장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타입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음
- 주방배기는 옥상에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렌지후드에는 댐퍼만 설치되는 공동배기방식을 적용함

	- 발코니에는 배수용드레인이 설치되고, 에어컨 실외기실은 수도꼭지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배수용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 - 일부 발코니에는 선홈통,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됨 - 세대 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됨 - 지하층 승강기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기계실(열교환실) 설치위치 : 403동 인근, 펌프실 설치위치 : 406동 인근] - 세대 내 실내 환기는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강제배기)을 적용하며, 실외기실에 환기유닛 및 플렉시블 덕트가 노출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제품사양에 따라 미서기창 탈착 후 발코니에 반입 가능함 - 46A형, 46B형, 55A형은 발코니2 PL창호의 열변형 방지를 위해 실제 시공 시 쿡탑 위치가 창호 반대편으로 다소 이동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싱크대 상하부장 구조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I 스피커와 스마트키는 세대 당 각 1개가 지급됨 - 1층, 2층 및 최상층 세대의 경우 동작감지기가 거실, 침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며, 기타층 세대는 거실에 설치됨 - 부부욕실(또는 공용욕실)에 설치되는 무선형 비상버튼을 누를 경우 월패드, 관리실, 경비실에 경보음이 울리게 되며, 설치제품에 대한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발코니는 천장형(최상층은 벽부형), 피난구 및 실외기실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됨. - 빨래건조대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빨래건조대 자체조명이 리모컨으로 점소등되며, 별도의 조명기구가 설치되지 않음 - 최상층 세대의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층 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됨 - 통신 세대단자함은 신발장 뒷면에 설치되며, 전기 세대분전반과 생활정보기 설치 위치에 따라 일부 형별에서는 현관 중문 설치가 제한될 수 있음 - 무선랜(AP) 초기비밀번호는 입주 시 안내될 예정이며, 변경이 가능하고 비밀번호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지구 내 학교 관련**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등의 용지는 해당 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단지 북측 당수초등학교임 - 중학교의 경우 북부중학군 2구역(대평중, 명인중, 송원중, 율전중, 이목중, 정천중, 천천중), 북부중학군 3구역(율현중, 구운중, 서호중) 호매실중학군(상촌중, 칠보중, 호매실중, 능실중) 공동학군이며 배정방법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군내 지망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고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 배정(입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학교 학군(구)은 매년 설정·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입주에 따라 중학교 설립수요 발생 시 지구 내 중학교가 설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군(구)가 조정될 수 있음 - 수원시 지역은 평준화지역으로 고등학교 학생 배정방식은 학생의 주소지에 의한 근거리 배정이 아니며, 경기도 평준화지역 학생 배정 방식에 의해 배정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입학전학포털

	(http://satp.goe.go.kr/)에서 반드시 배정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전편입학 안내> ○ 수원 내 일반계고 입학 전 배정 및 전학 배정 방법은 일반고 입학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학생의 배정지원서를 기준으로 구역 내 컴퓨터 프로그램 추첨 배정을 하게 됩니다. ○ 수원시 일반계고 전학 배정에 대한 사항은 수원학군 입학추첨관리교(수원여고 031-250-9152)를 통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 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로 해당 등급 표시)

가) 소음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소음	★

나) 구조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성능	★★★
6.	에너지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 물질의 사용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다)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	자연지반 녹지율	★
3.	생태면적률	★★
4.	비오톱 조성	-
5.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6.	자연 환기성능 확보	-
7.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8.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4) 생활환경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 내 . 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 . 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5) 화재소방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 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6.	피난설비	★★

* ★로 해당 등급 표시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수원당수 A-4BL	한국토지 주택공사	계룡건설산업(주) 이에스건설(주)	-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주) 외 4개사

11. 주거약자용 주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약칭 주거약자법) 에 따른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자에 따른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46AS형, 55AS형) 편의시설 설치**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거실조명밝기 및 시각경보기 설치	청각장애인
부엌	좌식싱크대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욕실	높낮이조절 세면기설치	
침실	침실조명밝기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신호기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46AS형, 55AS형)에는 욕실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동작감지센서등(현관, 욕실출입구), 안전손잡이(현관, 샤워실, 좌변기, 욕조), 바닥미끄럼방지, 바닥단차줄임, 비상연락장치(욕실, 침실), 동체감지기(욕실앞), 높낮이조절 샤워기, 비디오폰 설치, 가스밸브 높이조정이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 실 (공용욕실, 부부욕실 중 1개소 설치)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확대	
	출입문 개폐방향변경(공용욕실에 한함) 출입문 미서기로 변경(부부욕실에 한함)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 조절 세면기	
주 방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거 실	비디오폰 높이 조정	
	야간센서등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기 타	음성유도신호기	시각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부부욕실은 55타입만 해당됩니다.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안내**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본 공고문 및 첨부파일 참조**(*별첨5, 6)**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서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중 택1) 제출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최초 공급 계약 체결기간 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준공 6개월 전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접수 받으며, **계약기간 마감일('22.4.8(금))**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 됩니다.

※ 우편물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경기본부 임대공급2부
수원당수 A-4블록 행복주택 담당 (우편번호:13637)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2부

팸플릿 배부처	■ LH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2부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2층 마이홈센터 ■ LH 수원권주거복지지사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광교 안효회관 11층
임대문의	■ **마이홈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인터넷 - LH청약센터 (http://apply.lh.or.kr)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당첨자 ARS	■ 1661-7700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0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